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순 천 시 의 회 의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0. ~ 8. 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9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27.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교부결정 취소사유 및 보조금 신청 제한 등 과도한 규제 사유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보조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9조)
 - ‘사정변경’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과도한 재량 여지가 있어 삭제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조례 제29조)과 통합하여 취소사유 조항 일원화
-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정비(안 제22조)
 -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15. ~ 7.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18.(여성가족과-22400)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6. 15.(전략기획과-6378)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15.(순천시 공고 제2018-1021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제2항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u> 에 따른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계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행정안전부</u> ----- ----- -----.
④ (생 략) <u>제19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u>	④ (현행과 같음) <u>제1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u>
① 시장은 <u>지방보조금 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u>	① 시장은 <u>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u>
<u><신설></u>	1. <u>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u> 2. <u>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u>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
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삭제>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22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공시)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
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
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3.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5. 지방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 6. 지방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공시)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행정안전부 -----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삭제>

없을 때

7. 기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9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27.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2018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7조 제2항 삭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조항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법령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6. 25. ~ 7. 1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6.20.(여성가족과-22809)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6.19.(전략기획과-6443)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6.25.(순천시 공고 제2018-1036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p> <p>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9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27.

1. 개정이유

-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 주민불편·부담의 조례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계약 해지 시 의견진술 기회 의무적 부여
- 사용자가 주관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필요하여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15. ~ 7.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6. 7.(전략기획과-606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15.(순천시 공고 제2018-1012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련시설물”을 “시설물”로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 본문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자목 중 “만65세 이상 및 6세 이하의 어린이”를 “65세 이상 및 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련시설을”을 “시설을”로 한다.

제16조 중 “수련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수련시설은” 을 “시설은” 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중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 을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 담당 이” 을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과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7호 중 “면제” 를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현행 제10호)중 “제18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28조 다음에 “제4장 보칙” 을 삽입한다.

제29조 중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을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및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기본법</u>」----- 「<u>청소년활동 진흥법</u>」----- ----- ----- ----- ----- -----</p>
<p>제3조(정의) (생략)</p> <p>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7. (생략)</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이하인</u> -----</p> <p>2.~7.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영) ① 시장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제3항 및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청소년기본법</u>」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운영) ① ----- ----- 「<u>청소년 기본법</u>」----- ----- 「<u>청소년활동 진흥법</u>」 ----- ----- ----- 「<u>청소년 기본법</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원장) 수련원에는 청소년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자격은 「<u>청소년활동진흥법</u>」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p>	<p>제6조 ----- ----- ----- ----- 「<u>청소년 활동 진흥법</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p>	<p>제12조(손해배상) ① ----- <u>시설물</u> -----<u>잃어버</u> <u>렸을</u> ----- -----</p> <p>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14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u>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1회 이용시 3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전액감면</p> <p>가. (생 략)</p> <p>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50퍼센트 감면</p> <p>가.~라. (생 략)</p> <p>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p> <p>바. ~ 아. (생 략)</p> <p>자. <u>만65세 이상 및 6세 이하의 어린이</u></p>	<p>제14조(사용료 감면) ----- ----- <u>사용료를</u> ----- ----- ----- ----- -----</p> <p>1. 전액감면</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인정하는</u> --</p> <p>2. (현행과 같음)</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p> <p>바. ~ 아. (현행과 같음)</p> <p>자. <u>65세 이상 및 6세 이하의 사람</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u>수련시설</u>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략) <p>② (생략)</p>	<p>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시설을 ----- 2.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소지품 제한) 시장은 <u>수련시설</u> 사용자의 휴대물품이 공중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물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때에는 소지의 제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6조(소지품 제한) -----<u>시설</u> ----- ----- ----- -----</p>
<p>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그 밖의 시장이 수련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 인정하는 --
<p>제23조(수당 등) <u>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u></p>	<p>제23조(수당 등)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25조(위탁운영)</p> <p>① ~ ③(생략)</p> <p>④ 위탁한 <u>수련시설</u>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u>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u>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업무담당</u>이 된다.</p> <p>⑥ (생략)</p> <p>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에 따라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u>을 지지 아니한다.</p> <p>1. <u>수탁자가 수련시설을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u></p> <p>2. <u>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u></p> <p>3. <u>수탁자가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u></p>	<p>제25조(위탁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시설은 -----</p> <p>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u></p> <p>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u></p> <p>2. <u>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u></p> <p>3. <u>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u></p>

현행	개정안
<p><u>4.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u></p> <p>제28조(권한의 위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p> <p>8. (생략)</p> <p>9.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등</p> <p>10. 제18조에 따른 소지품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삽입></p> <p>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p>	<p>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u>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p> <p><u>5. 수탁자가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u></p> <p>② 시장과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권한의 위임)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감면</u></p> <p>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9. 제1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29조(준용) -----</p>

현행	개정안
<p>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 -----</p>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27.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모든 작은도서관(사립 포함)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상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2. 주요내용

- 개정 전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후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15. ~ 7.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1.(여성가족과-205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5. 30.(전략기획과-58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15.(순천시 공고 제2018-1017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u>구성 운영</u> <u>하여야 한다.</u> ②~③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u>구성 운영할</u> <u>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7. 27.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전액감면율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
- 체육시설 부대시설(교육장) 사용료 요금 현실화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율 개정(안 제11조)
 - 11조1항1호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 11조1항2~11호 80%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율 개정
- 상위법에 근거규정 없는 규제 삭제(안 제14조 3항 사용자의 설비)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율 개정(안 별표3)
 - “시민중 경로우대자” 를 “65세 이상의 사람” 으로 개정
 -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감면율 인하 : 기존 “50%” →변경 “30%”
- 시설물 사용료 및 이용료 개정(안 별표2)
 - 교육장 사용료 인상 : 시간당, 기존 10,000원 → 변경 20,000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6. 29. ~ 7. 19.)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28.(여성가족과-23691)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6. 20.(전략기획과-6571)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29.(순천시 공고 1195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가, 전라남도 및 시”를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시대표”를 “시대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0호를 각각 제10호, 제12호, 제13호로 하며, 제8호, 제9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현행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1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250,000	300,000	400,000	6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보조경기장 필드는 기준 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별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1회사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9,000
팔마골프연습장	자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9,000

○ 교육장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20,000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10m ²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전람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3m ² 이내	100,000	50,000	30,000	1일 1개
	3m ² 이상 6m ² 이내	150,000	100,000	50,000	1일 1개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 시설 (앰프 및 마이크 등)	교육장 · 정구장	1일1회	14,000	
	기타시설	"	40,000	
전 광 판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코어판 포함
일반전기 (조명)	기 념 관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기 타 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1/30×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용량+요금단가
냉 · 난방	기 념 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전기사용 요금+부가세	
	팔마체육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유류사용 요금+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료+부가세	
운 동 기 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공 공 용 지		3.3m ² 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 10% 추가징수)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 로 그 램		기 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 고
수영	일 반	1개월	74,000원	54,000원	3,0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60,000원	40,000원	2,000원	
	어 린 이	1개월	50,000원	30,000원	1,500원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수영 + 에어로빅		1개월	8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에 어 로 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 소 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 드 턴 민	일 반 인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 린 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체력 단련실	일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문화건강센터

비고

1.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 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12.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3.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이 용 료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50%	
	15.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을 동행한 보호자	50%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6. 65세 이상의 사람	50%	일반사용자
	1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증빙서류"를 소지한 자	50%	
	1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30%	
	1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2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감면하거나 5일 연장
	21.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2.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23. 장기 이용회원	15%	3개월
20%		6개월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단, 14호,15호,16호, 23호는 제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 나 주관하는 행사</u></p> <p>2. <u>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 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시대표로 등 록된 선수훈련</u></p> <p>3 ~ 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8.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불우청소 년,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9.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 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p>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 -----.</p> <p>1. <u>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u>-----</p> <p>2. <u>시대표로</u> 등록된 선수훈련</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국민체육진흥법</u>」 제33조에 따른 <u>대한체육회</u>, 제34조에 따른 <u>대한장애 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 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 원단체 포함)</u></p> <p>9.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p> <p>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 청소년, 어린이, 「<u>국민기초생활 보 장법</u>」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p> <p>11.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 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 립지원 활동</p> <p>12. (현행 제9호와 같음)</p> <p>13.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② (생략)</p>	<p>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p>	<p>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p>[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p> <p>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p>	<p>[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p> <p>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용시간</th> <th colspan="2">체육행사</th> <th colspan="2">일반행사</th> </tr> <tr>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td> <td>주간 1일</td> <td>34,000</td> <td>54,000</td> <td>108,000</td> <td>162,000</td> </tr> <tr> <td>팔마주경기장 필드</td> <td>주간 1회 3시간</td> <td>250,000</td> <td>300,000</td> <td>400,000</td> <td>600,000</td> </tr> <tr> <td>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td> <td>주간 1일</td> <td>30,000</td> <td>40,000</td> <td>70,000</td> <td>100,000</td> </tr> <tr> <td>팔마보조경기장 필드</td> <td>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td> <td>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td> <td>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상사경기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상사풋살경기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팔마체육관</td> <td>주간</td> <td>50,000</td> <td>80,000</td> <td>140,000</td> <td>210,000</td> </tr> <tr> <td>야간</td> <td>75,000</td> <td>120,000</td> <td>200,000</td> <td>300,000</td> </tr> <tr> <td rowspan="2">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td> <td>주간</td> <td>14,000</td> <td>20,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다목적체육관</td> <td>주간</td> <td>20,000</td> <td>27,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31,000</td> <td>41,000</td> <td>-</td> <td>-</td> </tr> <tr> <td>팔마양궁장</td> <td>주간 1일</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팔마족구장 (1코트당)</td> <td>주간</td> <td>14,000</td> <td>20,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상사호야구장</td> <td>주간 1회 4시간</td> <td>20,000</td> <td>4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보조경기장 필드는 기준 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별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p>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250,000	300,000	400,000	6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용시간</th> <th colspan="2">체육행사</th> <th colspan="2">일반행사</th> </tr> <tr>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td> <td>주간 1일</td> <td>34,000</td> <td>54,000</td> <td>108,000</td> <td>162,000</td> </tr> <tr> <td>팔마주경기장 필드</td> <td>주간 1회 3시간</td> <td>250,000</td> <td>300,000</td> <td>400,000</td> <td>600,000</td> </tr> <tr> <td>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td> <td>주간 1일</td> <td>30,000</td> <td>40,000</td> <td>70,000</td> <td>100,000</td> </tr> <tr> <td>팔마보조경기장 필드</td> <td>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td> <td>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td> <td>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상사경기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상사풋살경기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60,000</td> <td>80,000</td> <td>110,000</td> <td>140,000</td> </tr> <tr> <td>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td> <td>주간 1회 3시간</td> <td>3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팔마체육관</td> <td>주간</td> <td>50,000</td> <td>80,000</td> <td>140,000</td> <td>210,000</td> </tr> <tr> <td>야간</td> <td>75,000</td> <td>120,000</td> <td>200,000</td> <td>300,000</td> </tr> <tr> <td rowspan="2">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td> <td>주간</td> <td>14,000</td> <td>20,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다목적체육관</td> <td>주간</td> <td>20,000</td> <td>27,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31,000</td> <td>41,000</td> <td>-</td> <td>-</td> </tr> <tr> <td>팔마양궁장</td> <td>주간 1일</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팔마족구장 (1코트당)</td> <td>주간</td> <td>14,000</td> <td>20,000</td> <td>-</td> <td>-</td> </tr> <tr> <td>야간</td> <td>20,000</td> <td>30,000</td> <td>-</td> <td>-</td> </tr> <tr> <td>상사호야구장</td> <td>주간 1회 4시간</td> <td>20,000</td> <td>4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주경기장 필드는 1일 1회 초과 사용 불가 ※ 보조경기장 필드는 기준 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별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 조곡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각장애인 외의 사용자에게 해당</p>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250,000	300,000	400,000	6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250,000	300,000	400,000	6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4,000	54,000	108,000	162,000																																																																																																																																																																																																																																																								
팔마주경기장 필드	주간 1회 3시간	250,000	300,000	400,000	600,000																																																																																																																																																																																																																																																								
팔마보조경기장 육상트랙	주간 1일	30,000	40,000	70,000	100,000																																																																																																																																																																																																																																																								
팔마보조경기장 필드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풋살장	1회 3시간	30,000	50,000	-	-																																																																																																																																																																																																																																																								
상사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상사풋살경기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60,000	80,000	110,000	140,000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주간 1회 3시간	30,000	50,000	-	-																																																																																																																																																																																																																																																								
팔마체육관	주간	50,000	80,000	140,000	210,000																																																																																																																																																																																																																																																								
	야간	75,000	120,000	200,000	300,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다목적체육관	주간	20,000	27,000	-	-																																																																																																																																																																																																																																																								
	야간	31,000	41,000	-	-																																																																																																																																																																																																																																																								
팔마양궁장	주간 1일	20,000	30,000	-	-																																																																																																																																																																																																																																																								
팔마족구장 (1코트당)	주간	14,000	20,000	-	-																																																																																																																																																																																																																																																								
	야간	20,000	30,000	-	-																																																																																																																																																																																																																																																								
상사호야구장	주간 1회 4시간	20,000	40,000	-	-																																																																																																																																																																																																																																																								

현 행	개 정 안
-----	-------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팔마골프연습장	자 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1회사 용	월회원	
팔마체육관	1회2시간		30,000		20,000		14,000		9,000	
팔마정구장 팔마테니스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팔마골프연습장	자 유	10,000	120,000	10,000	120,000	10,000	120,000	3,000	36,000	
다목적체육관	1회2시간	1,000	20,000	700	14,000	500	11,000	300	6,000	
팔마양궁장	1회2시간	2,000	40,000	1,500	30,000	1,000	20,000	600	12,000	
팔마족구장	1회 2시간	조명등 미사용	1,500	20,000	1,000	15,000	700	11,000	450	6,000
			사용	2,000	30,000	1,500	20,000	1,000	20,000	600

○ 교육장

○ 교육장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10,000원

용 도	기 준	사 용 료
교 육	1시간	20,000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10㎡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전람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3㎡이내	100,000	50,000	30,000
3㎡이상 6㎡이내	150,000	100,000	50,000	1일 1개

구 분	금 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영화 촬영	○주간 27,000 ○야간 54,000			
2.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	○1개 1일간 5,500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3. 팸플릿 프로그램 판매	○판매부수 1매당 가격 - 총판매금액 20/100정수			
4. 게시부착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10㎡	• 5일 이내 50,000 - 1일 초과 5,000		
5. 진열·전람 광고물	기 준	사 용 료		
		주 경 기 장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기 타
	3㎡이내	100,000	50,000	30,000
3㎡이상 6㎡이내	150,000	100,000	50,000	1일 1개

현행				개정안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종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구분 종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방시 (애플 마켓 등)	송설장 · 정구장	1일 1회	14,000		방시 (애플 마켓 등)	송설장 · 정구장	1일 1회	14,000	
	기타시설	"	40,000			기타시설	"	40,000	
전광 판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크어판 포함	전광 판		"	기본료(40,000) · 월기본요금/30 · 실제사용료	스크어판 포함
일반전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 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x/30 x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 용량요금단가	일반전기 (조명)	기념관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무대조명시 기타시설 사 용료 적용 -기본료:월기본료x/30 x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 용량요금단가
	기타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x/30 x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 용량요금단가		기타시 설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기본료:월기본료x/30 x사용일 -실제사용한전기료전기사 용량요금단가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 전기사용 요금+부가세		냉 · 난방	기념관	"	· 냉방 - 기본료(20,000)+실제 전기사용 요금+부가세	-
	팔마체 육 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 유류사용요금+부가세			팔마체 육 관	"	· 난방 - 기본료(20,000)+실제 유류사용요금+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라 이 트		"	- 기본료+실제사용한전기 료+부가세	
운 동 기 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운 동 기 구		"	14,000	배구, 배드민턴 네트 및 지주대 세트
공 공 용 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 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 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10% 추가징수)	공 공 용 지		3.3 ㎡ 당	7,000	상행위를 목적으 로 할 때 (단 1회 사용은 10일 이내 로 하며 초과분에 한하여 1일10% 추가징수)

현행							개정안						
다. 프로그램 이용료							다. 프로그램 이용료						
프로그램	기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고		프로그램	기준	이용료(강습)	자유이용	일일이용	비고	
수영	일 반	1개월	74,000원	54,000원	3,000원		수영	일 반	1개월	74,000원	54,000원	3,0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60,000원	40,000원	2,0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60,000원	40,000원	2,000원	
	어 린 이	1개월	50,000원	30,000원	1,500원			어 린 이	1개월	50,000원	30,000원	1,500원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경 로	1개월	해당없음	15,000원	1,500원	
수영 + 에어로빅		1개월	8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영 + 에어로빅		1개월	8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에 어 로 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에 어 로 빅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요가		1개월	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쿠아로빅		1개월	66,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어린이축구		1개월	40,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복싱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청소년, 군인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유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유도	일 반	1개월	50,000원	20,000원	해당없음	
	청 소 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청 소 년	1개월	45,000원	14,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어 린 이	1개월	40,000원	11,000원	해당없음	
배드민턴	일 반 인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배드민턴	일 반 인	1개월	45,000원	30,000원	1,5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청소년, 군인	1개월	40,000원	20,000원	1,000원	
	어 린 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어 린 이	1개월	34,000원	14,000원	700원	
체력 단련실	일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문화건강센터	체력 단련실	일반, 청소년	1개월	해당없음	30,000원	2,000원	문화건강센터
비고 1.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 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비고 1.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 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2.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분	감면율(할인율)	비고	구분	감면율(할인율)	비고
1. 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100%		2. 시대표로 등록된 선수훈련	8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100%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순천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8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100%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8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100%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80%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0%	천연잔디구장은 제외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100%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u><신설></u>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80%	
<u><신설></u>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100%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u><신설></u>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2.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50%	
10.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13. 축구장의 조간사용	50%	천연잔디구장, 토·일, 공휴일 제외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50%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50%	
12.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을 동행한 보호자	50%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5.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을 동행한 보호자	50%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3. 시민중 경로 우대자	70%	수영장 월 이용자	16. 65세 이상의 사람	50%	일반사용자
	50%	일반사용자	1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증빙서류"를 소지한 자	50%	
1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증빙서류"를 소지한 자	50%		1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30%	
15.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50%		1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16.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2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가면하거나 5일 연장
1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입여성	10%	수영장 월 이용자에 한정하여 가면하거나 5일 연장	21.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18. 수영·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30%		22.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19.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50%	협조 공문 제시	23. 장기 이용회원	15%	3개월
20. 장기 이용회원	15%	3개월		20%	6개월
	20%	6개월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단, 11호,12호는 제외)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이용료 감면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단, 14호, 15호, 16호, 23호는 제외)		